

서울지방법원

제50민사부

결정

사건 99카합1795 이사회결의일부효력정지등
 신청인 별지 1 기재와 같음

피신청인 주식회사 제일은행

대표이사 류시열

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.

신청취지 신청인의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, 별지 2 기재 이사회 결의 중 "정부 및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한 주주의 보유주식을 전량 무상소각"하는

결의 부분에 대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별지 2 기재 이사회 결의 중 "정부 및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한 주주의 보유주식을 전량 무상소각"하는 결의 부분의 효력을 정지한다.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위 효력정지 부분의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. 위 본안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신청인들이 별지 3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각 주주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.

이 유

1. 신청인들이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인 사실, 금융감독위원회에서 1999. 6. 25. 피신청인 회사에 대하여 별지 4 목록 기재와 같은 자본금감소명령(이하 "이 사건 처분"이라고 한다)을 내리자, 피신청인 회사 이사회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1999. 6. 26.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신청인들 보유 주식 전량을 무상소각하기로 하되, 신청인들에게 1주당 금 907원의 가격으로 주식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결의(이하 "이 사건 결의"라고 한다)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다.

2.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.

가.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인 금융산업외구조개선에관한법률(이하 "이 사건 법률"이라고 한다) 제12조 제3항은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(이하 "정부 등"이라고 한다)가 보유한 주식과 차별하여 일반 주주의 주식을 강제적으로 무상소각할 수 있게 하는 점에서 위헌이므로, 위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.

나. 위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 하더라도, 이 사건 처분은 정부 등이 보유한 주식과 일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점과 신청인들 보유 주식에 대하여 반드시 무상소각을 하여야 할 필요성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, 위 조항을 잘못 해석하거나 지나치게 재량권을 남용하여 내려진 것으로서, 그 하자가 중대하여 당연 무효이다.

다. 그렇다면, 당연 무효인 이 사건 처분에 기하여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진 피신청인 회사 이사회의 이 사건 결의는 신청인들의 주주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서,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할 것이므로,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한다.

3. 판단

살피건대,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주요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,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, 의미,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(대법원 1997. 5. 28. 선고 95다15735 판결 등 참조).

기록에 의하면, 자산·부채 평가 결과 부채가 자산을 1조 8,000억원 이상 초과하는 등 은행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피신청인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자, 금융감독위원회가 피신청인 회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내리기에 이르

렸고, 이 사건 처분을 전제로 한 정부 동의 출자가 없다면 피신청인 회사가 가까운 장래에 파산에 이를 가능성도 큰 점, 이 사건 처분일 기준으로 피신청인 회사의 주식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가 0원으로 산정된 점(다만, 피신청인 회사의 시장가치가 금 2,720원으로 평가되어,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및 시장가치를 합산한 다음 3으로 나눈 가격을 주식의 매수가격으로 결정하게 되었다),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 전에 피신청인 회사는 장차 일반 주주의 주식이 무상소각될 수 있음을 수 차례 공시한 점이 각 인정되고, 이 사건 법률에서 정부 동의 출자에 의한 주식과 나머지 주식을 차별하여 무상소각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하면,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법률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여 내려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는 보기 힘들다.

또한,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어, 이 사건 처분이 신청인에 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되는 이 사건 법률 제12조 제3항에 근거하였다는 이유만으로,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도 보기 힘들다.

그렇다면,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, 이 사건 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피신청인 회사는 영업정지, 영업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되어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처분 내용에 따른 피신청인 회사 이사회의 이 사건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는 보기 힘들다.

따라서,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1999. 7. 7.

재판장 판사 박 재 윤

 판사 곽 병 훈

 판사 문 광 섭

별지2

자본금감소 이사회결의

1.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보통주식 2억 6,558만 206주(총발행주식수의 82.99%)
2. 감자의 방법
 -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 보유주식 : 1주의 금액 5,000원의 주식 5.5127주물 같은 액면의 주식 1주로 병합
 -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한 주주의 보유주식 : 전량 무상소각
3. 감자기준일 : 1999. 7. 8.
4. 구주권 제출에 관한 사항
 - 구주권 제출기간 : 1999. 6. 29. - 1999. 7. 8.(10일간)
 - 주권 제출장소 : (주) 제일은행 본점 및 영업점(단, 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)
5. 주식매수청구에 관한 사항
 - 주식매수청구기간 : 1999. 6. 29. - 1999. 7. 8.(10일간)
 - 주식매수청구장소 : (주) 제일은행 본점 및 영업점(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)
 - 주식매수가격 : 1주당 907원(당행과 회계전문가가 금융감독위원회의 감자명령을 받을 당시의 당해 재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임)
 - 주식매수대금 지급개시 예정일 : 99. 7. 12.
6. 채권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 - 이의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 : 1999. 6. 29. 현재 당행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
 - 이의 제출기간 : 1999. 6. 29. - 1999. 7. 8.
7. 단주의 처리방법 : 주식의 병합에 적합하지 아니한 1주 미만의 단주는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 종가물 기준으로 현금지급
8. 감자이유 :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자본금 감소명령에 의함
9. 이사회 결의일 : 1999. 6. 26. -이상-

별지4

자본금감소명령

1. 금융산업의구조개선관련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거 기존 주식 전부를 병합하
되, 동법 제13조의 2 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 제8항에 의거 협의율 위하여
주주에게 제시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가격에 병합주식수(신주 1주로 병합되
는 주식수를 말한다)를 곱한 가격이 병합후 신주의 액면가 이상이 되도록 병합비
율을 정할 것.

다만, 동법 제12조 제3항에 의거 동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출자한 정부 등이 소
유한 주식 이외의 주식은 모두 무상 소각할 것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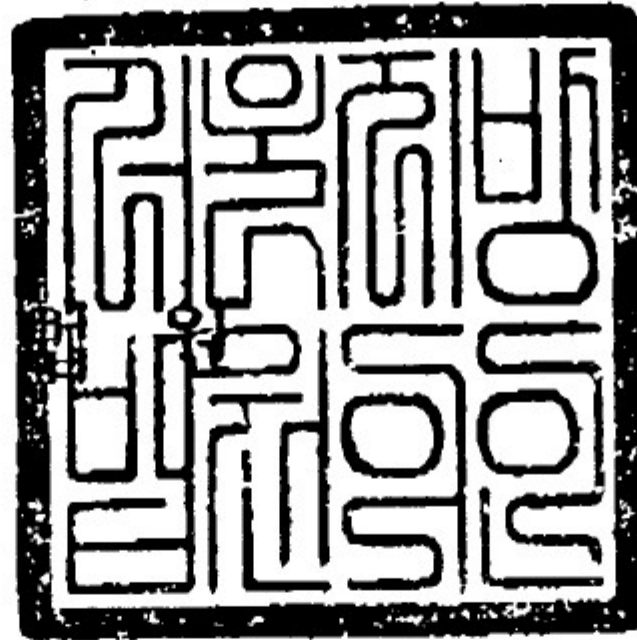
2. 이사회는 상기 방법에 의한 자본금 감소를 1999. 6. 28.까지 결의할 것.

-이상-

정 본 입니다.



서울지방



1999. 7. 07

법원주사

서정

